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3일, 이용우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 축조심사 · 의
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12.)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용우의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

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중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손을춘)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된 안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주영)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을 위한 채불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채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채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채불경위, 채불기간, 횟수, 채불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채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